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 - 1171호

2018년도 하반기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하반기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채용분야별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채용예정계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필기시험과목
			계	남	여	양성	
계			8	5		3	
경력경쟁 채용	지방소방경	법무	2			2	필기시험 면제
	지방소방위	헬기조종	3	3			필기시험 면제(실기시험대체)
	지방소방장	헬기정비	1	1			필기시험 면제(실기시험대체)
	지방소방교	구급상황관리	1			1	(필수)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운항관리	1	1			

2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해당법률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 경쟁 채용	법 무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5. 12. 31.
	헬기조종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2. 1. 1. ~ 1995. 12. 31.
	헬기정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5. 12. 31.
	구급상황 관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8. 12. 31.
	운항관리		
<p>*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 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지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이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p>			

다. 신체조건(「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붙임2”)에 의함.

라.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원서접수일 현재 취득자에 한함)
 - ※ 「법무분야」 및 「헬기조종 및 정비 분야」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 여부와 관계없음
-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법 무 (지방소방경)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사법연수원 수료)이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헬기조종 (지방소방위)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③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헬기정비 (지방소방장)	❖ 「항공안전법」제35조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구급 상황관리 (지방소방교)	❖ 1339-11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계속 근무 중인 구급상황관리사이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운항관리 (지방소방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운항관리(관제)에 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계급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3 ▶ “붙임3” 참조

바.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산정 시 유의사항

【자격(면허)】

-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자격(면허)는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 및 폐지된 자격증 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함

【경력기간 산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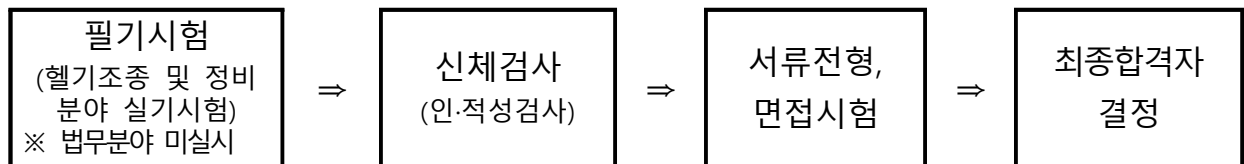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 법인 여부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분야 경력기간은 **최종시험(면접)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 (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제출 시 반드시 우측상단에 경력확인부서 직통전화번호, FAX번호 기재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3 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가. 시험의 진행



⇒ 전(前)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 한하여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법무 분야)

- 신체검사(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헬기조종 및 정비 분야)

- 실기시험 + 신체검사(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구급상황관리 분야)

- 필기시험 + 신체검사(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운항관리 분야)

- 필기시험 + 신체검사(인·적성검사)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나. 시험방법

① 필기시험

○ 시험과목

경력경쟁채용 (3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시험시간 :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헬기조종 및 정비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하되 소방청에서 실기시험 지원(시험일정 및 장소 별도 공고 예정)

② 신체검사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단,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3』에 의함(“붙임 2”)

※ 헬기조종분야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승무원 신체 검사 증명서로 대체

③ 서류전형

- 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
 -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점에 안내 예정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가 적합한 사람

④ 면접시험(※ 면접시험 전 인·적성검사 실시)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 가 점 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인·적성 검사 :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 및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법무분야는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헬기조종 및 정비, 구급상황관리, 운항관리 분야는 필기(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10%의 합계인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4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8. 8. 20.(월) ~ 8. 23.(목) 09:00 ~ 21:00 [취소기간: 2018. 8. 20.(월) ~ 8. 27.(월)]		
1차	필기시험	10. 4.(목)	10. 13(토)	11. 9.(금)
2차	신체검사	11. 9.(금)	11. 14.(수) ~ 16.(금)	11. 28.(수)
	인.적성검사 (서류제출 포함)	11. 28.(수)	11. 30.(금)	-
3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포함)	11. 28.(수)	12. 13.(목)	12. 24.(월)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
-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변경 내용 공고
- ※ 헬기조종 및 정비 분야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고 예정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함.

- 응시원서 취소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접수 및 취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http://www.incheon.go.kr) (☎1522-0660)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은 하나만 인정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점 인정).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의 점수를 가산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분야별로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점 인정).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의사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바람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가산특전 종류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필가·신체검사·서류전형·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공지함.
- 응시자는 시험(필기·면접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포기로 간주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가능함.

나. 필기시험 유의사항

-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순서대로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험운영본부에서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고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수정테이프는 사용가능)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함.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 B형 간염(보균자 포함), 색약, 기타 질환자 등은 신체검사 시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라.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채용후보자 미등록,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함.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사과(032-440-2533~6) 또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2-870-3012~4)로 문의 바람.

※ 붙임자료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3. 임용예정계급의 계급환산 기준표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야		내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방식 등 연소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야		내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유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기초 등 화재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원리(방법) - 소화방법(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효과)별 소화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회다리아병·트리빠노쫂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 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 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 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3]

임용예정계급의 계급환산 기준표

구분 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등 학교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소방령 지방 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지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 (3년이상)
소방위 지방 소방위	6급	경위	중위 소위 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지방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소방사 지방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 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등 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